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1가단3475 판결 [차용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우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471,600원 및 그중 130,221,05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의 지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법률상 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들과 2018. 6. 9. 원고가 피고 B에게 158,030,000원(당시 환율로 550,000리얄¹⁾에 해당함)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측에 2018. 6. 10. 350,000리얄, 2018. 6. 28. 15,000리얄, 총 365,000리얄(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와 "총 금액 오십만리얄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수령금액은 365,000리얄이다. 2018년 11월 10.일 변제일을 기준하여 원리금 합계 401,500리얄을 지불하며 변제기일 미지급시 월 2.5%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내지 원고 회사와 E의 계약

1) 원고 회사는 2018. 1. 29.경 E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통신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E에 150만 리얄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자금 차입 약정서'(갑 제29호증)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회사 간에 이자 약정을 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인지되어, 2018. 4. 12.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와 자금투입계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금투입계약서

자금투입자 D.(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E(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자금투입계약을 체결한다.

1. 발주자: F

2. 원도급공사명: G

3. 원도급사: H

하도급사: E

4. 공사장소: I

5. 자금투입기간: 2018년 1월 29.일 ~ 2018년 4월 12.일

6. 투입금액: 1,646,000 SAR(438,933US\$)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7. 투입자금의 지급: 공사 완료 후 2018년 8월 10.일까지 지급기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원고는 2018. 9. 9. E 사우디 지사장인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차용증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계약은 '이 사건 E와의 계약'이라 하고,
금전차용증서는 '이 사건 2차 약정서'라 한다).

금전차용증서

3. 차용금액: 일금 사십삼만팔천구백삼십삼 USD(USD438,944 = 1,646,000 SAR)

4. 차용일자: 2018년 1월 29.일 ~ 2018년 4월 10.일

5. 상환일자: 2018년 8월 10.일

6. 원금 연체이자: 월 1.5%

3) 원고는 2018. 9. 18. E와 채무변제기일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변제기일 합의서

채무총액: 일백육십사만육천리얄(SAR 1,646,000)

상기채무액 변제기일에 대하여

2018년 10월 15.일까지 칠십만리얄을 지급하며

2018년 11월 10.일까지 삼십만리얄을 지급하며

2018년 11월 30.일까지 잔액 전액을 변제키로 합의하고, 매지급일 기준하여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E 측에 2018. 1. 29. 430,000리알, 2018. 1. 30. 70,000리알, 2018. 2. 27. 300,000리알, 2018. 4. 15. 500,000리알, 총 1,300,000리알(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5) 피고 C는 2019. 7. 1. 원고에게 "최종정산시 손해보전으로 일금 일십만리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라. 원고의 양수금

원고는 2018. 9. 12. J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254,000리알의 채권 중 100,000리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C는 2018. 9. 18. 이를 승낙하였다.

마. E 측의 변제

E 측에서는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금원을 변제하였다(피고들은 아래 변제금이 모두 E 사우디 지사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2018. 10. 18.	170,000
2018. 11. 6.	100,000
2018. 11. 11.	30,000
2018. 11. 15.	100,000
2018. 11. 22.	100,000
2018. 11. 29.	20,000
2018. 12. 26.	80,000
2019. 1. 24.	150,000
2019. 2. 3.	200,000
2019. 4. 23.	100,000
2019. 4. 24.	100,000
2019. 6. 30.	100,000
2019. 7. 17.	100,000
2019. 10. 3.	350,000
2019. 11. 3.	100,000
2020. 5. 20.	25,000

2018. 10. 18.	170,000
2020. 11. 12.	110,000
합계	1,935,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3, 14, 17, 2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피고 C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471,600원[= (원금 365,000리알 + 이자 36,500리알) × 356.76원2)] 및 그중 130,221,050원(= 원금 365,000리알 × 356.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총 365,000리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인 2018. 6. 9. 5개월의 이자를 계산하였고,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이 사건 확인서상 변제기는 2018. 11. 10.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상 변제기는 2018.

11. 10.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원금 500,000리알에 이자 50,000리알(= 대여금 500,000리알 × 월 2% × 5개월)을 더한 550,000리알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상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을 401,500리알[= 원금 365,000리알 + 이자 36,500리알(= 원금 365,000리알 × 월 2% × 5개월)]로 계산한바, 이 사건 대여계약상 약정이자율은 월 2%(연 24%)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지연손해금률이 월 2.5%(연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여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적용된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율은 연 24%이고,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지연손해금률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이율과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4%로 계산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00리알 및 그 중 365,000리알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대여금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 C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E 측에서 원고에게 총 1,935,000리알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변제충당 재항변에 관하여

1) 재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제한 돈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이 사건 양수금채권 등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2) 검토 가) 별개의 동종채무의 존재

(1)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

(가) 이 사건 E와의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E에 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E와의 계약 및 채무변제기일 합의서는 위와 같이 발생한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금액을 정리하고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① 이 사건 1차 약정서 작성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가 투자하는 공사의 명칭 및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 사건 1차 약정서의 투입금액은 1,646,000리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E에 지급한 1,300,000리얄과 투자수익금 346,000리얄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총 1,646,000리얄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 ②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획서 및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 ③ 위 공사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회사 사이에서 이자 약정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이러한 문제점이 인지되어 갑 제29호증의 자금 차입 약정서는 결국 피고 측에 교부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갑 제9호증의 자금투입계약서가 작성되었다)3), 이 사건 1차 약정서는 E 사우디 지사 명의로 되어 있다.

④ 위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E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⑤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은 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투자금 및 이익금 합계 1,646,000리얄(= 원금 1,300,000리얄 + 투자수익금 346,000리얄)을 차용원금으로 하여, 새로운 변제기일과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이 사건 E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1차 약정서의 투입금액과 피고 C가 수표로 지급한 금액 및 이 사건 E와의 계약과 채무변제기일 합의서에 따라 E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이 같고, 이 사건 1차 약정서 및 이 사건 E와의 계약, 채무변제기일 합의서는 E 사우디 지사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액

따라서,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액은 1,646,000리얄(= 원금 1,300,000리얄 + 투자수익금 346,000리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와의 계약에서 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

이 사건 메시지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약정서에 의한 투자금 및 이익금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E의 지사장인 피고 C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보전으로 100,000리얄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손해보전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약정된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후적으로 손해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은 E가 하수급받은 통신선로 공사의 공사대금 최종 정산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최종적으로 적자를 보았기에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 변제일인 2020. 11. 12.을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의 변제기로 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을 연 18%를 더하여 계산하여도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원고가 J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3호증의 수표 기재에 의하면, 수표의 지급기일이 2018. 10. 31.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변제일을 2018. 10. 31.으로 볼 수 있다.

나) 변제충당 결과

E 측에서 위 기초사실의 마.항과 같이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계약은 피고들 개인이 아닌 E와의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차용증의 기재 내용상 그러할 뿐만 아니라 피고 C도 본인 신문시 이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들이 변제 사실에 대해 제출한 증거(을 제2호증)는 피고 C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내역이고, ② 피고들의 총 변제액수는 1,935,000리알로 이 사건 대여계약상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며, ③ 피고 C는 E의 지사장 지위에서 원고에게 변제계획을 기재한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④ 위와 같이 피고 C가 변제계획을 보낼 때, "공사는 착공하였고 공사가 끝나 이익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바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선수금은 받았지만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공사를 중단 없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원고가 투자한 공사의 진행 내역 및 자금 상황을 함께 공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에 대해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E 지사장 피고 C의 지정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제충당내역은 별지 변제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마지막 변제일인 2020. 11.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은 원금 20,280리알이 남는다.

다) 소결론

살피건대, E가 원고에게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E와 피고 C의 변제액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동종채무(이 사건 E와의 계약에 따른 채권, 이 사건 손해보전금 채권)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인용금액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27,160원[(원금 365,000리알 + 이자 36,500리알)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0. 30.의 최종 매매기준율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367.44원4)) 및 그중 원금 134,115,600원(= 365,000리알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0. 30.의 최종 매매기준율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367.4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471,600원 및 그중 130,221,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창형

별지

대리인의 이 사건 소송 초반의 진술은, 사후적으로 1,646,000리얄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서(갑 제10호증)가 작성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술한 것일 뿐 '2018. 1. 29. E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본문의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사실에 대한 자백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30. 기준 매매기준율이 1리얄이 367.44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